

# 그룹 VAN 활성화를 위한 合同간담회

협회는 구립 4일 그룹 VAN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업계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註〉

일시 : 1987년 12월 4일 하오 2시

장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姜 世 元 (효성히다찌시스템 이사)  
權 泰 瑞 (한국전기통신공사 기업통신사업부장)  
金 永 泰 (에스·티·엠 사장)  
金 天 賦 (두산산업 사무개선본부 부장)  
金 光 鍊 (한국데이터통신 응용통신사업본부장)  
朴 信 晟 (삼성데이터시스템 상무)  
宋 衡 鈜 (대한항공 시스템사업부 차장)  
李 宗 淳 (체신부 통신정책국 정보통신 과장)  
李 宗 運 (현대전자산업 이사)

〈가나다 순〉

▲ **金永泰** 사장 :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자유화의 일환으로 조치된 VAN의 “공동사용 특례인정”은 그룹사의 기업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길을 터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그룹사들이 VAN에 참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 VAN”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어느 정도 망 구성의 진척을 보인 곳도 있고 또 저희 에스·티·엠같이 「후발」로 있읍니다.

그러나 크게보면 모두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느니 만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단계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처럼의 기회인 이 자리에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정책 실무를 맡고 계신 체신부의 이종순 과장께서 그룹 VAN 육성에 대한 체신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 **李宗淳** 과장 : 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그룹 VAN허용은 체신부 측에서 볼 때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읍니다. VAN 자유화의 ‘6·29선언’이었다고나 할까요.

얼마전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 간부들이 회합을 가진 자리에서도 산업체 전산화에 적극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업계 VAN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업계와의 사이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한꺼번에 해결 못할 일들은 같이 방안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VAN 자유화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과 공중통신사업자의 사업분야와의 경쟁관계, 그리고 국내 통신산업의 수준등 여러가지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계의 사업 진척도를 비롯하여 발전계획, 희망사항 등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金天賜** 부장 : 저희 그룹은 VAN을 사업 목적으로 추진해 오지는 않았읍니다. 기기통합에 의한 업무개발로 그룹의 경영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VAN을 추진해 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첫째, 법률적으로 그룹 VAN을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



그러나 VAN 자유화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과 공중통신사업자의 사업분야와의 경쟁관계 그리고 국내 통신산업의 수준등 여러가지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할 계획과 연구 발전시킬 방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다중화장비의 사용입니다. 현재 공동이용 특례 인정에는 다중화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한국데이터통신의 “특정통신 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제20조 1항에는 다중화장비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사용 특례인정을 받는 경우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세째, 회선사용권의 승계입니다. 특례인정 이전 그룹 각사가 청약 사용하던 통신선로는 당연히 대표자의 명의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째, 공동사용과 역무제공의 망을 별도 구분하여 구축하는 점입니다. 그룹 VAN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용목적이 역무제공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2분하는 것은 업계의 부담이 됩니다.

다섯째, 회선사용료 인하와 통신선로의 품질개선 문제입니다. 회선사용료는 회선이용 회수의 증가에 따라 이용이 증대되는데 이를 감안해 주었으며 하고, 그리고 통신선로의 품질은 기업의 업무처리 효율이나 고객 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DNS의 품질향상과 사용료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宋衡鉉 차장 : 다중화장비 사용에 대한 의견은 두산 측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 네트워크 분리구성은 각각 별도의 컴퓨터를 설치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자금부담과 자원을 낭비케 됩니다.

따라서 특례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를 동일 컴퓨터상에 수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요금체제에 있어서 이용약관 제50조 1항 4호에는 요금감면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감면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조속한 제정이 아쉽습니다. 또 전화국 회선의 제공서비스가 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속도별 요금제 폐지를 요망하고, 국제회선 혼합사용시 10%의 부가료 부과는 KTA의 별도 설비제공사항이 아니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선구성시 KTA 직원이 직접건물 MDF까지 회선구성 및 품질측정을 한 후 사용자에게 인계토록 하고, 실제 회선 개통일로부터 사용요금이 부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李宗運 이사 : 두 분이 앞서 지적하신 외에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간 DNS 공동사용 규제도 완화했으면 합니다.

## 간담회

다.

또 VAN 관련 주관기관 일원화와 관련법규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표준규격 추진의 정부투자 및 정책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金永泰사장** : 어지간한 협인문제들은 거의 다 지적된 것 같습니다. 행정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서 효과적 재난방지 대책의 구축을 위한 자가무선설비 이용상 제약조건 완화와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범위의 확대, 고속 회선제공의 조기 실현 및 품질 보증, 사용자에게 망 구성기술 및 통신회선 선택의 기회 부여 등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 **李宗淳 과장** : 그룹 VAN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부가가치통신사업과 고도 통신사업의 구분이 아직 안돼 있는데, 또 앞으로도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하여 언제 성격을 구분, 정책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방압력, KTA 민영화, 한국데이터통신의 위치 설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전제 또는 부수문제가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90년대에나 가능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시점에서 적당한 때를 지적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다중화장비 사용 문제는 정부고시에 맞추어 특례로 해제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世元 이사** : 다중화장비를 현재 쓰고 있는 곳도 있고, 투자비도 있으므로 당장 승인이 어려우면 경과조치로서 쓸 수 있게 허용했으면 합니다.

▲ **李宗淳 과장** : 그 문제는 회원사 자료조사를 해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사용권 승계는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 외에 업계 요구를 수용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체계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내는 인상요인을 갖고 있으며, 시외는 인하될 조짐입니다. 현재 시내는 KTA 음성급에 기초하여 전화가입자 평균요금보다 낮습니다. 그룹 VAN과 역무제공의 전산기 사용문제는 법령 개정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전산기 공동사용을 가능케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 즉, 역무제공 영역을 확대해 회선의 타인 사용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과 공동사용으로 특정한 관계에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룹 VAN 대표자가 역무제공자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 전자의 무제한 인정은 불가능하고 후자의 경우 특정한 관계의 사업자를 관리하는 가운데 차차 확대해 가

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姜世元 이사** : 그룹의 섬유업체들이 대구지방으로 집중돼 있어 그 지역과의 연결이 시급하고, 판매점이 있는 회사들은 1일 정보교환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서 데이터가 대량으로 유통되게 되면 패킷망의 사용이 불가피한 것이 저희 그룹 사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리점, 특약점, 거래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룹사의 전산망화 추진의 목적과 부합되리라 생각됩니다.

▲ **朴信暉상무** : 그동안 삼성그룹의 VAN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VAN의 발전방향이 조속히 설정되어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美·日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년대에 가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느낌인데 삼성그룹은 88년 후반에 가서 VAN 개발 업무 능력이 그룹사와 거래하는 업체들과의 연결까지 가능해지리라는 전망입니다.

▲ **李宗淳 과장** : 90년대 이전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라도 결정할 것입니다. 체신부의 기본방침은 VAN에 관한 한 민간의 사업체제를 적극지원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요구가 있으면 수렴할 방침입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짚어 두어야 할 것은 당분간 VAN의 완전 자유화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항공과 한국데이터통신이 합작 본격 VAN사업체인 여행정보사를 설립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할 방침입니다.

또 지적하신 선로품질 문제는 한국데이터통신이 현재 새로운 특정회선을 구상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 **金光鍊본부장** : 연초 DNS 사용자들에게 품질보증 문제를 설문 조사했는데 의외로 고속을 요구하고 있어서 광케이블 이용 고품질 회선 설치를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새 고속회선의 서비스 시기는 89년 초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설치되면 1.544Mbps 회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DNS 품질문제는 한국데이터통신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 관련부서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고, DNS 사용료는 국내가 싸고 국제는 반대로 비싼 편입니다. 현재 국제 사용료에 한하여 인하 작업중입니다.

▲ **李宗淳 과장** : 정보의 양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데

규격별 요금을 버리고 회선수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 宋衡鉉 차장 : 음성급에서만 적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金永泰 사장 : 데이터 통신량이 많은 쪽은 감안해 준다면 가능할텐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기업에선 분산처리도 갈 수 밖에 없읍니다.

▲ 李宗淳 과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자 산업측에서 지적하신 규격제정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 權泰榮 부장 : 일반전화가 1천만 회선에 이르고 있는데 비하여 데이터통신 회선은 2만2천회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정통신회선의 품질 개선을 하려면 중계회선을 교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은 막대한 반면 회선이용 자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광케이블로의 교체는 회선이용자가 더 많아질 때나 가능할 것입

니다.

▲ 金永泰 사장 : 지금까지는 주로 제도상, 공중통신사업자의 기술제공상의 개선과제들을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그룹 VAN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된 정보전달체계의 마련, 고객의 기밀보안 및 안전체계 구축 등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와 연구개발, 잠재고객의 수요창출, 표준화 등 정부와 공중통신사업자 및 VAN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논의 결과 각 그룹사들이 느끼고 있는 과제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각 그룹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큰 줄기에 대한 의견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으로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

#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 선진기술의 신속한 전달 등 정보전달 기능을 다할 본지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제한 없음.

2. 길이 : 제한없음

3. 마감 : 매달 10일

4.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28 한국데이터통신  
사옥 1204호 정보통신진흥협회 회  
지 편집위원회(전화: 796-6444 ·  
796-6555) 앞.

## 5. 유의사항 :

- 가급적 200자 원고지를 사용하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도표나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

- 외국어는 국문으로 번역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팔호 안에 국문번역을 병용.

## 6. 기타 :

- 필자의 사진(명함판 또는 반명함판) 1장과 필자소개서, 연락전화번호 명기.
- 고료를 우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장번호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기.